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결정 경로 분석 -계획행동이론 중심-

김지운¹, 김용덕^{2*}

¹건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²건양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A Pathway Analysis on Determination of Nursery Teachers' Reporting Intention for Child Abuse: Focused on Planned Behavior Theory

Ji-Woon Kim¹, Yong-Duck Kim^{2*}

¹Division of Children, Konyang Cyber University

²Faculty of Arts, Konyang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독립잠재변인을 구성하고 계획행동이론에 기초하여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신고의도가 어떠한 경로로 결정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C지역의 67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며, 235명을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은 측정모형 분석과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모델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둘째,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지식은 신고의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신고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태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교사의 신고에 관한 태도는 신고의도를 가장 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육교사의 주관적 규범과 신고 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보육교사의 지각된 행동통제는 신고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율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constructs independent potential variables that are variables expected to affect child abuse reporting intention of child care teachers. In addition, this study establishes a research model based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otential variabl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nd planning behavior the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at factors affect and how reporting intention is determin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a convenience sample of nursery teachers working in 67 daycare centers in the C region.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the research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was found to be a suitable model to explain the child abuse teacher's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easurement and structural models. Second, the child abuse teacher's knowledge of child abuse is an important factor explaining the reporting intention and has an indirect effect through the mediation. Third, attitudes toward reporting of child care teachers were found to be the most direct factor that predicts reporting intentions. Fourth, subjective norms and reporting intentions of child care teacher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basic data for improving child abuse reporting rate of childcare teachers were presented.

Keywords : Child Abuse, Child Abuse Reporting Intention, Planning Behavior Theory, Knowledge of Child Abuse, Nursery Teacher

*Corresponding Author : Yong-Duck Kim(Konyang Cyber Univ.)

email: vzonee@hanmail.net

Received October 7, 2019

Accepted December 6, 2019

Revised November 6, 2019

Published December 31, 2019

1. 서론

아동학대는 신체적·인지적 손상, 정서적 고통 등 아동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장·단기적 후유증을 초래한다. 또한 아동학대로 인해 치료, 격리보호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적 비용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피해아동의 조기 발견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1].

우리나라는 2000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아동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신고의무 제도를 마련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신고의무자를 누구로 지정하느냐 인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초·중·고교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강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24개 직군을 포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신고의무자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다.

2017년[2], 전국 6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34,169건으로 2016년 25,878건, 2015년 16,651건의 아동학대 신고율 추이를 볼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접수된 신고 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28.6%(8,830건), 비신고의무자의 경우 71.4%(22,093건)로 나타났다. 비록 신고의무자 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전년(2016년) 대비 7% 상승한 수치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17,177건(76.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리양육자가 3,343건(14.9%)로 나타났으며, 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사례도 2,84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12.7%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종사자 중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학대가 1,345건(47.3%)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교직원에 의한 학대도 1,121건(39.4%)에 이른다. 피해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10~15세가 43.8%로 높게 나타났으나, 6세 이하가 25.2%로 나타난 것에 주목해야 한다. 6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발달상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자신의 학대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성인 등 주변의 도움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학대의 위

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3]. 특히 6세 이하의 아동학대 피해는 전인적 인간으로의 발달에 누적적 영향을 미쳐 발달의 부정적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보육교직원은 매일 아동을 관찰할 수 있고, 표준화된 발달 기준을 통해 아동의 현재와 과거의 행동 혹은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매우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4,5]. 그러나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교직원의 신고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는 아동학대에 관한 지식이나 태도 등의 개인적 요인이 신고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6,7]. Lamond[8]는 단순히 아동을 자주 접촉하는 것 자체 보다는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이나 학대의 심각성 인식 등이 아동학대 신고의도 및 신고행동의 동기요인이라고 하였다. 아동학대 신고는 가정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일 수 있다는 인식과 신고 후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돌아올 불편함 등을 고려한다면, 아동학대의 인지가 즉각 신고로 이어진다는 것은 쉽게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9]. 특히 학대 행위자가 대부분 친부모이기에 자신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대처하지 못하는 영유아는 보육교사들이 매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견하고 개입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및 신고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의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강상과 유수정[3]의 연구는 유아교사 대상 연구를 통해 아동학대 지식 및 사례지식, 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수준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황인옥[10]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경력, 학력, 근무기관의 유형에 따라 신고의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 지식과 태도, 보육교사의 주관적 규범과 자기효능감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은 다르지만, 김진선과 박경숙[11]은 Feng[12]의 연구를 토대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김수정[1]은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연구에서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

도와 신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며, 특히 이론적 틀을 근거로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연구는 시도된 적이 없다. 다만, 김진선과 박경숙[11]의 연구에서 계획행동이론 변수의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가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김수정[1]에서도 계획행동이론을 기반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계획행동이론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변수와 신고의도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국한되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아동학대 지식과 신고자의 환경적 여건이 계획행동이론 틀에서 구조적으로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규명하지 못했다. 특히, 간호사 및 초등학교 교사와 보육교사는 근무하는 환경이 다르므로 보육교사의 경우, 신고의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는 아동과 소통하고 직접 관찰할 수 있어 아동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및 행동의 중요성은 크게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이 그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에 결정되고, 의도는 그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의 세 가지 심리사회적 결정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계획행동이론에 주목하여,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보육교사의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아동학대 지식과 보육교사의 환경변수가 계획행동이론 변수들과 어떠한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독립잠재변인을 구성하고 선행연구 결과 및 계획행동이론에 기초하여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신고의도가 어떠한 경로로 결정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지식과 심리사회적 결정 요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며 보육교사의 환경적 여건과의 관계성도 함께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 주요 신고의무자로서 보육교사의 역할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신고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활용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계획행동이론

Ajzen[14]의 계획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Fishbein등[15]의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이 확장된 것으로서 심리적인 결정 인자의 이해를 높이고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고안되었다[1]. 합리적 행동이론은 개인의 행동이 그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결정되고, 의도는 그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어떤 행동에 대해 개인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 행동을 내가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면 행동의도가 높아지고, 결국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1]. 그러나 행동의도는 그 행동이 개인의 의지적 통제 하에 있을 때에만 실제 행동의 정확한 예측 변수가 되며, 의지에 의한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한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그 한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Ajzen[14]은 지각된 행동통제 요소를 추가하여 계획행동이론을 제시하였다.

계획행동이론에서, 행동은 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에 직접 영향을 받고, 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의 세 가지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 계획행동이론은 행동을 결정하는 태도, 주관적 규범의 동기적 요소와 지각된 행동통제의 비동기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행동의도 및 행동을 설명하는 유용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12]. 그러나 지각된 행동통제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측정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계획행동이론 변수의 설명력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변수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제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1].

계획행동이론은 여러 사회 행동을 설명하는 일반이론으로 제안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행동의도와 실제행동을 연구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분야에서도 신고의도 및 신고행동을 설명하는 구조를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Feng[12]은 계획행동이론을 기반으로 간호사들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으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간호사의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수정[1]의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하였으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

동통제가 신고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아동학대 지식 요인과 교사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추가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계획행동이론을 단순 적용하여 신고의도와 관계를 확인하거나[12], 아동학대 지식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계획행동이론 변수와 동일한 관점으로 추가 적용하여 검증하였으며[1], 계획행동이론 변수들과 추가적인 변수들의 구조적 관계는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아동학대 신고의도 관련 요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행동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며, 계획행동이론 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외에 아동학대 지식과 환경변수를 추가하여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2 아동학대 지식과 신고의도의 관계

보육교사들은 자신이 법적으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요구되는 상황 그리고 신고 절차 등을 알아야 한다. Feng등[16]에서는 아동학대 및 관련법과 신고절차 그리고 아동학대 사례에 관한 지식의 부족은 신고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상과 유수정[3]은 유아교사 대상 연구를 통해 아동학대 지식 및 사례지식, 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수준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수정과 이재연[13]은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는데, 아동학대 사례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은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옥[10]의 연구에서도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지식과 태도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초등 교사 296명의 신고행동을 연구한 Goebbels 등[17]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사례 증상에 관한 지식은 신고행동에 중요한 결정 인자로 나타났지만, 아동학대 및 관련법, 신고 절차에 관한 지식은 신고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남순[18]의 연구에서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나, 직업 유형이 신고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나, 아동학대 및 신고 절차 등의 관련 지식은 신고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아동학대 지식을 아동학대 및 관련법 및 신고 절차 지식과 아동학대 사례에 관한 지식으로 구분하

여 확인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명자[19]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인식수준 및 지식이 신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학대 지식이 태도를 매개로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지식과 계획행동이론의 독립변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신고의도 간의 경로구조를 규명하고자 한다.

2.3 보육교사의 환경변수

보육교사의 개인적 요인과 아동학대 신고의도 및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 선행 연구 결과들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Goebbels등[17]의 연구에서는 경력이 많은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들에 비해 더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지속해서 신고했다. 이와 달리 Webster 등[20]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경력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도 교사의 신고행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alsh등[21]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가 신고의무자의 신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결혼 여부는 신고행동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8]. 황인옥[10]의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경력, 학력, 근무기관의 유형에 따라 신고의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인식하고 신고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신고행동에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초등 교사, 간호사 등 116명의 신고의무자를 조사한 허남순[18]의 연구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 신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oebbels등[17]의 연구에서는 초등 교사들이 받은 교육이 아동학대의 인식이나 신고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개선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고의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고행동과 연관성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경력, 자녀유무, 교육요인을 통제변수로 적용하여 신고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지식(아동학대 관련 지식, 아동학대 사례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와 경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독립잠재변인을 구성하고 Ajzen[14]의 계획행동이론을 기반으로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신고의도가 어떠한 경로로 결정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ig.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1에서 점선으로 구분된 부분은 Ajzen[14]의 계획행동이론 모델이며, 실선으로 구분된 부분이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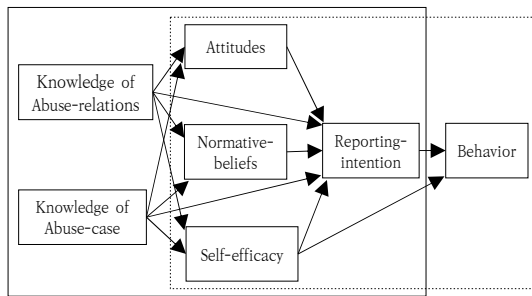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C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선정을 위해 67개 어린이집을 편의표집 한 후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4월 초부터 2019년 4월 말까지 설문지를 배포한 후 2~3일 기간을 두고 직접 및 우편을 통해 수거하였다. 설문지는 전체 248부를 수거하였으며, 문항의 답변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되는 13부를 제외하고 235명의 설문을 분석에 적용하였다.

3.3 측정도구

3.3.1 아동학대 신고의도

아동학대 신고 의도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하여 신고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의사가 있는지를 의

미한다[1]. 이에 대한 측정은 Feng[12]이 개발하고 Fraser등[22]이 사용하였으며, 김수정[1]이 수정 사용한 문항을 보육교사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은 학대가 의심되는 가상적인 아동학대 사례를 유형별(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로 2개 문항씩으로 전체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까지 7점 리커트척도로 나타냈으며,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신고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고의도 척도의 신뢰도는 김수정[1]에서 Cronbach's $\alpha=.8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alpha=.79$ 로 나타났다.

3.3.2 아동학대 지식

아동학대에 관한 지식은 아동학대, 관련법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아동학대 관련 지식'과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유형별(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로 제시한 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에 대한 인식 수준에 관한 '아동학대 사례 지식'으로 구분된다. 아동학대 관련 지식의 측정은 Feng[12]이 개발하고 김수정[1]이 수정한 것으로, 아동학대, 관련법 및 신고 절차에 대한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예', '아니오', '모름'으로 응답하며, 문항별 '예', '아니오'로 응답하여 정답일 경우 1점, '모름'이나 오답일 경우 0점으로 하여 그 결과를 합산하는 총화평점 척도로 사용되었다. 해석은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관련 지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 사례 지식의 측정은 Feng[12]이 개발하고 김수정[1]이 수정 사용한 8문항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보육교사의 특성에 맞게 수정 사용하였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학대 유형별(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로 2개 문항씩 총 8문항으로, 가 문항의 응답 방식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의 7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사례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척도의 신뢰도는 김수정[1]에서는 Cronbach's $\alpha=.73$ 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alpha=.85$ 로 나타났다.

3.3.3 태도

태도는 아동학대 신고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보육교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1].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태도의 측정은 Fraser 등[22]이 사용하고 김수정이 번안 사용한 11문항의 척도를 보육교사의 특성에

맞게 수정 사용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신고 행동을 하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척도의 신뢰도는 김수정[1]에서 Cronbach's $\alpha=.7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alpha=.81$ 로 나타났다.

3.3.4 주관적 규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보육교사가 의식하는 주변 사람들인, 동료 교사 및 직원, 원장 등이 신고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개인이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주관적 규범의 측정은 Greytak[23]이 사용한 척도를 김수정[1]이 번안 사용한 것을 보육교사의 특성에 맞게 설정 사용되었다. 척도의 구성은 보육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신고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기대' 3문항, '지지' 3문항, '모델링' 3문항을 묻는 총 9문항으로 이루어진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신고 행동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많이 의식하는 것으로 본다. 주관적 규범의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김수정[1]에서 Cronbach's $\alpha=.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alpha=.89$ 로 나타났다.

3.3.5 지각된 행동통제(자기효능감)

Ajzen[14]의 계획행동이론에서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이 개인의 의지적 통제 하에 있을 때에만 실제 행동의 정확한 예측 변수가 되며, 의도 및 행동에 주요 예측변수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지각된 행동통제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측정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되고 있으며[12], Ajzen[14]은 지각된 행동통제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과 비슷한 개념으로 특정 행동을 실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쉽고 어려운가를 개인이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도 지각된 행동통제에 관한 연구들이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는 가운데 최근의 연구자들은 지각된 행동통제 보다 자기효능감이 신고행동에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7,22,23]. 이에 본 연구에서도 국내의 선행연구들 [1,10,12]과 같은 관점으로 자기효능감을 지각된 행동통제의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신고에 관한 자기효능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의 인식과 신고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 행동에 관한 자기효능감에 대한 측정은 Greytak[23]이 사용한 '신고에 관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김수정[1]이 수정 사용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사용되었다. 척도의 구성은 '아동학대 유형별 의심 사례 인식에 대한 자신감' 4문항, '아동학대 유형별 의심 사례 신고에 대한 자신감' 4문항이며, 총 8문항으로 이루어진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신고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에 대한 자신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김수정[1]에서 Cronbach's $\alpha=.8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alpha=.91$ 로 나타났다.

3.3.5 통제변수

보육교사의 환경 요인을 측정하는 통제변수는 보육교사의 근무경력, 자녀유무, 아동학대 교육 경험을 적용하였다. 근무경력에는 비율척도로 주관식 응답으로 구성하였으며, 자녀유무는 '미혼', '자녀 없음', '자녀 있음'으로 명목 척도 구성하였다. 아동학대 교육 경험은 교육 이수시간을 비율척도로 주관식 응답으로 구성하였다.

3.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은 김계수[24]의 분석을 기초로 2단계 분석을 적용하였다. 1단계는 연구모형에 적용된 이론적 잠재변수들이 이론적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측정모형 분석을 하였다. 2단계는 설정한 연구모형의 요인 간 관계를 중심으로 이론모형을 검증하는 구조모형 분석을 하였다. 제시한 연구모형의 적합성 및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모형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의 기술통계분석은 SPSS 19.0이 사용되었으며,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은 AMOS 18.0이 사용되었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으로 C지역의 67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235명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30세 이하 40.4%(95명)이며, 30대가 35.3%(83명)으로 나타났다. 결혼 및 자녀유무는 51.5%

(121명)가 미혼이며, 자녀가 있는 보육교사가 39.6%(93명), 자녀가 없는 보육교사가 8.9%(21명)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경력은 5년 미만이 47.7%(112명), 5년 이상이 52.3%(123명)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수 시간은 5시간 이상이 35.2%(8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시간 이상 이수한 교사가 전체 66.7%(157명)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교사가 28명이 응답하여 11.9%에 이르고 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N(235)	%
Age	~30	95	40.4
	31~40	83	35.3
	41~	57	24.3
Child-O.X.	Single	121	51.5
	Child-YES	93	39.6
	Child-NO	21	8.9
Career	~ 3 year	63	26.8
	3 ~ 5 year	49	20.9
	5 ~ 10 year	75	31.9
	10 year ~	48	20.4
Time of Child Abuse-Edu. (Abuse-Edu.)	None	28	11.9
	~ 2 hour	55	23.4
	2 hour ~ 5 hour	74	31.5
	5 hour ~	83	35.2

4.2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신뢰도 (reliability) 평가와 타당성(validity) 평가를 위해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측정모형 분석은 잠재변수로 사용된 변수들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이론적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에 포함된 요인과 변수들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은 아동학대 관련 지식, 아동학대 사례 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효능감, 신고의도 변수에 대해 실시하였다. 또한 각 잠재변수들에 대해 측정모형이 얼마나 자료를 잘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지 확인을 위해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들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형의 적합성 평가는 적합성 지수 중 널리 쓰이고 있는 지수인 절대적합지수인 χ^2 통계량과 GFI, RMSEA, 그리고 중분적합지수로 NFI, NNFI와 간명적합지수 CFI를 사용하였다[24].

잠재변수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적합도 지수들은 $\chi^2=1102.323$, $df=314$, $p=.000$ 으로 p 값이 0.05보다 작게 나타나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χ^2 값은 사례수의 영향으로 모형과 자료의 불일치를 추정하는 경향이 있어 여러 가지 적합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24]. 따라서 다른 적합도 지수는 GFI=0.881, RMSEA=0.074, NFI=0.900, CFI=0.926, NNFI=0.902로 본 측정모형이 측정 자료를 비교적 잘 적합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적인 판단에 의한 적합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에서 제시한 신고의도 외의 모든 잠재변수들의 적합도 지수들이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는 잠재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대표적인 기준인 '평균분산추출지수(AVE:Average Variance Extracted)'와 '신뢰성(CR:Construct Reliability)'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변수들 모두 신뢰성(CR) 지수가 모두 .70이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평균분산추출지수(AVE) 또한 .50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5].

Table 2. CFA. of latent variables

Variables		A.V.E.	C.R.
Know. of Abuse-rel.	awareness of abuse	.86	.97
	law of child abuse	.86	.97
	report procedure	.87	.97
Know. of abuse-case	physical abuse	.85	.97
	feeling abuse	.91	.98
	sexual abuse	.83	.96
Attitudes	neglect	.88	.96
	atti. of report-result	.85	.96
	atti. of as-expert	.85	.96
Normative-beliefs	atti. of abuse-estab.	.89	.98
	expectation	.92	.99
	support	.90	.97
Self-efficacy	modeling	.96	.98
	conf. of case-awa.	.91	.98
	conf. of case-repo.	.85	.97
Reporting-intention	physical abuse	.86	.97
	feeling abuse	.87	.97
	sexual abuse	.86	.97
	neglect	.90	.98

4.3 구조모형 분석

4.3.1 정규성 검정과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사용되는 각 변수에 대한 정규성검정은 Shapiro-Wilk 검정을 통해 유의확률이 0.05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어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로 사용되는 각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률상관계수를 확인하였고, Table 3과 같다. 변수간의 상관계수들이 0.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해 본 결과, 1.031~1.972 범위로 2.5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25].

Table 3. Correlation and Variance inflation factor

	1	2	3	4	5	6	7
1	1						
2	.185 [*]	1					
3	.074	.093	1				
4	.128 [*]	.290 [*]	.504 ^{**}	1			
5	.048	.044	.514 ^{**}	.196 [*]	1		
6	.191 [*]	.061	.091	.413 ^{**}	.231 ^{**}	1	
7	.012	.079	.088	.294 ^{**}	.294 ^{**}	.093	1
8	.081	.181 [*]	.075	.091	.183 [*]	.067	.041
VIF	1.031	1.972	1.487	1.349	1.522	1.571	1.622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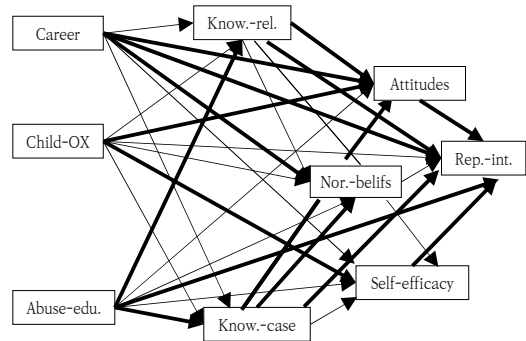
(1.Career, 2.Child-OX, 3.Abuse-edu., 4.Know.-rel., 5.Know.-case, 6.Attitudes, 7.Nor.-beliefs, 8.Self-efficacy)

4.3.2 연구모형 분석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잠재변수 및 통제변수들이 투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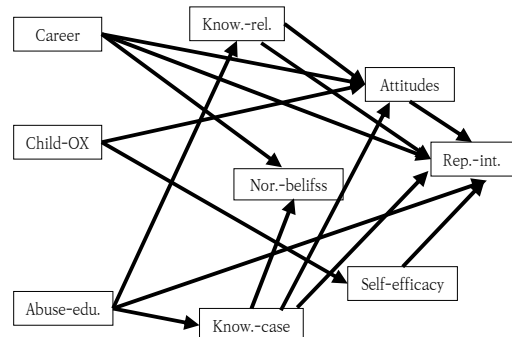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Fig. 2로 표시되었으며,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234.621(df=123)$, $p=.000$ 이고, $GFI=0.911$, $RMSEA=0.074$, $NFI=0.899$, $CFI=0.922$, $NNFI=0.902$ 로 나타나, 본 구조모형이 자료를 잘 적합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로분석의 결과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으로 나타난 경우 Fig. 2에서 진한 실선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된 결과에 의한 최종 경로구조(Fig. 3)와 경로분석 결과는 Table 4로 나타났다.



($\chi^2=234.621(df=123)$, $p=.000$, $GFI=0.911$, $RMSEA=0.074$, $NFI=0.899$, $CFI=0.922$, $NNFI=0.902$)

Fig. 2. First Research Model



($\chi^2=234.621(df=123)$, $p=.000$, $GFI=0.911$, $RMSEA=0.074$, $NFI=0.899$, $CFI=0.922$, $NNFI=0.902$, used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Fig. 3. Final Research Model

Table 4. Result of Path Analysis

Path	b	S.E.	C.R.	p-Val.
Career → Attitudes	.184 [*]	.177	2.713	.002
Career → Nor.-beliefs	.167 [*]	.171	2.330	.006
Career → Rep.-int.	.255 ^{**}	.121	3.688	.002
Cild-OX → Attitudes	.131 [*]	.185	1.902	.013
Cild-OX → Self-efficacy	.154 [*]	.138	2.130	.009
Abuse-edu.→Know.-rel.	.314 ^{***}	.082	4.762	.000
Abuse-edu.→Know.-cas	.394 ^{***}	.077	5.111	.000
Abuse-edu.→Rep.-int.	.221 ^{**}	.121	3.071	.002
Know.-rel.→Attitudes	.384 ^{***}	.088	4.886	.000
Know.-rel.→Rep.-int.	.094 [*]	.197	1.910	.032
Know.-case→Attitudes	.379 ^{***}	.091	4.843	.000
Know.-case→Nor.-beli.	.117 [*]	.163	2.000	.018
Know.-case→Rep.-int.	.285 ^{**}	.100	3.703	.001
Attitudes → Rep.-int.	.431 ^{***}	.063	5.331	.000
Self-efficacy→Rep.-int.	.203 ^{**}	.147	3.640	.004

***p<.001, **p<.01, *p<.05, b: standardized coefficient

4.3.3 효과분해 및 경로분석

최종 경로구조의 분석 결과 계획행동이론에서 신고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주관적 규범'은 보육교사의 '신고의도'와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모형에 적용된 주요 잠재변수들은 '신고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으로 변수들 간의 효과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로 분해함으로써 변수 간의 관계를 좀더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사이의 효과를 분해하여 그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 Path and Effect analysis

Path	Direct Eff.	Indirect Eff.(t)	Total Eff.
Career→Attitudes	.314	-	.314
Career→Rep.-int.	.225	.079(1.29)	.304
Child-OX→Attitudes	.131	-	.131
Child-OX→Rep.-int.	-	.154	.154
Abuse-edu.→Know.-rel.	.314	-	.314
Abuse-edu.→Rep.-int.	-	.051(1.52)	.051
Abuse-edu.→Know.-case	.394	-	.394
Abuse-edu.→Rep.-int.	.221	.168(2.00)	.389
Know.-rel.→Attitudes	.284	-	.284
Know.-rel.→Rep.-int.	.094	.122(1.50)	.216
Know.-case.→Attitudes	.379	-	.379
Know.-case→Rep.-int.	.285	.163(1.66)	.448
Attitudes→Rep.-int.	.431	-	.431
Self-efficacy→Rep.-int.	.203	-	.203

분해된 변수들 간의 효과는 잠재변수들이 최종적으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따라 각 변수들이 신고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다른 요인을 매개로 신고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직접적인 경로로 종속변수인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육교사의 환경요인으로 '경력', '아동학대 교육'과 '아동학대 관련 지식', '아동학대 사례 지식'이며,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였다.

[경로 1]

1. 경력 → 신고의도
2. 아동학대 교육 → 신고의도
3. 아동학대 관련 지식 → 신고의도
4. 아동학대 사례 지식 → 신고의도

5. 태도 → 신고의도

6. 지각된 행동통제 → 신고의도

두 번째의 경우는 신고의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없고, 매개적인 다른 요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신고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경로 2]

1. 자녀유무 → 신고의도

① 자녀유무→태도→신고의도

② 자녀유무→지각된 행동통제→신고의도

연구모형 분석에서 '주관적 규범'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획행동이론의 주요 변수인 '지각된 행동통제' 요인도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태도' 요인만이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지식'과 '아동학대 사례 지식'이 신고의도에 미치는 주요 영향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율 개선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어떠한 요인이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의도는 행동의 가장 정확한 예측 변수로 보고, 종속변수로 '신고의도'를 설정하고 계획행동이론을 기초로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로 밝혀진 교사의 환경요인과 아동학대 지식을 추가적인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구조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은 보육교사의 신고의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잠재변수들의 구성이 적합하였으며, 잠재변수는 측정모형 분석으로 관측변수를 통해 적절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구조모형도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보육교사의 환경적 요인으로 보육교사의 경력, 자녀유무, 아동학대 교육 정도는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경력은 신고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태도를 매개로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

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황인옥[13]의 연구에서 경력이 높을수록 신고의도가 높아진다는 보고와 일치된다. 자녀유무는 신고의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여부가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김수정 [1]연구와 결혼여부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김현주 등[7] 연구의 보고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교육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이며, 신고의도의 중요한 영향 변수로 보고된 아동학대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들의 신고의도가 교육받은 경험이 없는 교사들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황인옥[13]의 연구와 일치하며,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수정[1], 강상 등[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경험이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한 허남순[18], Fraser[22]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 교육은 신고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동학대 지식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지식은 신고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 지식은 아동학대, 관련법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아동학대 관련 지식'과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유형별(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로 제시한 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에 대한 인식 수준에 관한 '아동학대 사례 지식'으로 구분된다. 연구결과, 아동학대 관련 지식과 아동학대 사례 지식 둘 다 신고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 관련 지식이 많을수록, 아동학대 사례 지식이 많을수록 신고의도에 긍정적이라는 황인옥[13]의 연구와 일치하며,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수정[1]과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상 등[3]의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 관련 지식과 아동학대 사례 지식은 '태도' 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태도를 매개로 신고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아동학대 지식은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 태도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계획행동이론의 이론변수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이다. 본 연구에서 보육교사의 태도는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greytak[23],

김수정[1]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상 등[3]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태도를 '신고효과성'의 개념으로 정의하여 연구된 결과에서는 신고효과성을 신고의도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16] 보고했으나, 중요한 영향요인이 아니라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아동학대 교육 강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인식 강화로 신고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7]. 그러나 본 연구에서 태도는 신고의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신고의도의 선행요인들의 매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 계획행동이론 이론 변수 중 '주관적 규범'은 신고의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eng[12], Fraser[22], 강상 등[3], 김수정[1]등 기존 연구들의 보고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그러나 황인옥[13]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지식과 사례 지식, 신고에 관한 태도는 신고의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규범과 자기효능감으로 개념화 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신고의도와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주관적 규범과 신고의도의 경로구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며, 자기효능감 또한 신고의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관적 규범과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척도의 사용이 연구들마다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으로 개념 정의 하여 적용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행동의 자신감을 의미하는 지각된 행동통제가 신고의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보고하는 강상 등[3], 김현주 등[7], Feng[12]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황인옥[13]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 주관적 규범과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우리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될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만 한다. 특히 매일 아동을 관찰할 수 있는 보육교사는 매우 중요한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율 개선을 목적으로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잠재변수들의 관계구조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지식이 신고의도 및 행동에 중요한 요인이며, 이를 선행하는 요인이 아동학대 교육임을 경로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 지식은 보육교사의 신고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가 신고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보육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지식을 함양하고, 교육에 방향성이 보육교사의 태도 변화에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연구는 경로구조를 기반으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및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고의도를 설명하는 요인들의 개념정의와 척도의 개발이 부족하여 많은 연구들의 결과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은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신고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관계구조의 지속적인 규명과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한계로 연구모형에서 계획행동이론모델의 '행동' 요인을 포함하지 못했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행동을 직접 경험한 연구대상자를 다수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아동학대 신고행동 경험자가 다수 포함된 연구대상에 대하여 '행동' 요인을 포함한 구조모형 분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S. J. Kim, "Factors Influenc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porting Intention and Behavior on Child Abuse", Sookmyung Women's Uni., Doctors' thesis, 2012.
- [2]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The report of child abus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 [3] S. Kang, S. J. Ryou, "The Factor of early childhood teachers' reporting intention and behavior", Study on Welfar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ducare, Vol.18, No.4, pp.147-165, 2014.
- [4] McIntyre, T. C., 1987, "Teacher awareness of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11: 133-135.
- [5] Crenshaw, W. B., Crenshaw, L. M., and Lightenberg, J. W., 1995, "When educators confront child abuse an analysis of the decision to report", Child Abuse & Neglect 19(9): 1095-1113.
- [6] Kenny, M. C., "Child abuse reporting: Teachers' perceived deterrents", Child abuse and neglect, 25(1), pp.81-92, 2001.
- [7] H. J. Kim, "The factor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reporting intention on child abuse",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22, No.2, pp.127-144, 2018.
DOI: <http://doi.org/10.21459/kccr.2018.22.2.127>
- [8] Lamond, D. A. P., "The Impact of Mandatory Reporting legislation on report Behavior", Child Abuse & Neglect, 14(4), pp. 471-480, 1989.
- [9] H. O. Kim, "The Influence of Educare Teacher's Intention to Report on Action to report of Child Abuse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health Belief Variabl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41, 2013. 9, pp. 5-31.
- [10] I. O. Hwang, "Factors influencing nursery teachers' reporting intention on child abuse",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4, No.3, pp.329-345, 2015.
DOI: <http://dx.doi.org/10.17643/KJCE.2015.24.3.18>
- [11] J. S. Kim, K. S. Park, "Factors influencing nurses' reporting intention on child abuse.",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11, No.2, pp.211-220, 2005.
- [12] Feng, J. Y., "Factors associated with nurses'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 national survey of taiwanese nurse (doctoral dissertation).", The New York Uni., buffalo, USA., 2003.
- [13] I. O. Hwang, "Factors influencing nursery teachers' reporting intention on child abuse",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4, No.3, pp.329-345, 2015.
DOI: <http://dx.doi.org/10.17643/KJCE.2015.24.3.18>
- [14]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50, pp.179-211, 1991.
- [15] Fishbein, M., & Ajzen, I. "Belir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1975.
- [16] Feng, J. Y., Huang, T., & Wang, C. "Kindergarten teachers' experience with reporting child abuse in Taiwan", Child Abuse and Neglect, Vol. 34(2), pp.124-128, 2010.
- [17] Goebbels, A. F. G., Nicholson, J. M., Walsh, K., & De Vries, H., "Teachers' reporting of suspected child abuse and neglect: behaviour and determinants", Health education research, 23(6), pp.941-951, 2008.
- [18] N. S. Heo, "The Factors that Affect the Reporting Behavior of Mandated Reporter",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3, pp.209-230, 2003.
- [19] M. J. Yang, "A Study on the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Child Abuse Cognition on Their Attitudes

Towards Mandatory Reporting”, Korean Journal of Child Protection, Vol. 1(1), pp.21-49, 2016.

- [20] Webster, S. W., O’Toole, R., O’Toole, A. W., & Lual, B. “Overreporting and underreporting of child abuse: Teachers’ use of professional discretion”, Child abuse & Neglect, Vol. 29(11), pp.1281-1296, 2005.
- [21] Walsh, K., Schweitzer, R., & Bridgestock, R., “Critical factors in teachers’ detecting and reporting child abuse and neglect: Implications for practice”, Brisbane: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2005.
- [22] Fraser, J. A., Mathews, B., Walsh, K., Chen, L., & Dunne, M., “Factors influencing child abuse and neglect recognition and reporting by nurses: A multivariate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 47, pp.146-153, 2010.
- [23] Greytak, E. A., “Are teachers prepared? Predictors of teachers’ readiness to serve as mandated reports of child ab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2009.
- [24] G. S. Kim, “Amos 7.0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Seoul: Han-na-re, 2007.
- [25] Hair, J. F. Jr.,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 Saddle River, N.Y: Prentics-Hall International, 2005.

김 지 운(Ji-Woon Kim)

[정회원]



- 2002년 8월 :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
- 2015년 8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
- 2015년 3월 ~ 2015년 9월 :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2015년 10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발달, 유아음악

김 용 덕(Yong-Duck Kim)

[정회원]



- 1996년 2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이학석사)
- 2004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이학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관심분야〉

아동가족, 유아교육